

#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27호

2009. 5. 6(수)

선	기 관 의 장
람	

## 포 향 시

### ◀ 규 칙 ▶

- 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제512호) ..... 2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513호) ..... 7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14호) ..... 35

### ◀ 입법예고 ▶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제2009-592호) ..... 42
-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2009-597호) ..... 49

### ◀ 공 고 ▶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제2009-594호) ..... 58
- 200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공고(제2009-609호) ..... 60

회								
람								

**규 칙**

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6일

포항시 규칙 제 512 호

**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을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 상금 지급 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

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액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2만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p> <p>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조(정의) ----- -----</p> <p>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 ----- ----- ----- ----- ----- -----</p> <p>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 ----- -----</p> <p>2. ----- ----- -----</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lt;신설&gt;</p> <p>&lt;신설&gt;</p>	<p>4. <u>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 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u></p> <p>5. <u>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한 경우</u></p>																																																				
<p><b>【별표】</b></p> <p><b>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b></p>	<p><b>【별표】</b></p> <p><b>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b></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 반 행 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는接客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기형등 형상을 공공에게 관람 시킨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뭇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5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5만원</td> </tr> <tr> <td>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5만원</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는接客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기형등 형상을 공공에게 관람 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뭇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5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신고대상 위반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포상금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td> </tr> <tr> <td>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법 제23조제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td> <td style="text-align: center;">5만원</td> </tr> <tr> <td>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만원</td> </tr> </tbody> </table>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액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3조제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2만원
위 반 행 위	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는接客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기형등 형상을 공공에게 관람 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뭇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5만원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액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3조제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2만원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6일

포항시 규칙 제 513 호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 오타

리 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할 때, 건물소유자가 신청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
-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 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 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



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카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2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로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2통) 및 수혜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급수분할적용)**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직권가구분할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가구분할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며,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가구 분할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조례 제23조규정에 의한 급수용구소유자 명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16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되 수용가에 의한 자가 검침을 할 수 있으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 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7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옥내시설 누수에 대한 감면)** ①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시설의 누수중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 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량이 가장 많은 달의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감면하되, 감면액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감면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하여는 월 5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3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월 3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되, 30톤 미만 사용업소는 해당요금을 감액 한다.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제21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2. 계량기의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의 증감 원인 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폐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법령 위반사항 확인
6. 정기·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7. 사용료 징수 및 납부 독려
8. 상수도 요금관련 각종 민원처리
9.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10. 계량기 교체 업무

**제22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조례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는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관계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로부터 인수한 각종 공부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망실 시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업무 수행중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 3.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된 경우
- 4.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제25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영업2종 최종단계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

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교체 후 15일 미만의 사용량인 경우 전월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사용량 및 최근 3개월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사용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실사용량을 일수로 계산한 수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시설규모·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조례 제6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 시장이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가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료를 고지할 때에는 제2항의 체납액을 병과 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경비)** 조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년도에 정산한다.

**제31조(증표)**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5조 및 제38조에 의한 조치 또는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최종단계의 영업용요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3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개별통지 후 환부한다.

**제3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자가 조례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④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량기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 ⑤ 계량기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 한때에는 지체 없이 상수도사업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공사비의 지원)** 조례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
-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까지의 배관
-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부 칙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제20조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의 검침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신 청 인	급수전위치 (설치위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전 화 번 호	
급수종별		공사구분	신설( ), 개조( ), 수선( )	
월소요량	톤/월	구 경	mm	
건축허가 내 역	허가번호		허 가 일	
	건 축 주		용 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급수공사시행 신청을 하며,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급수설비 일체를 귀 시에 기부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설계카드

설 계 내 역											과 장		
명 칭	규격	수 량	단위	총 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b>1. 토 공</b>													
토사구간(인력)			인									담당	
인도구간(인력)			"										
시멘트구간(인력)			"										
경고테이프설치			M										
작업 안전 시설			식									심사자	
관로지시핀설치			개소										
공사안내판설치			식										
토사구간(장비)			M										
시멘트구간(장비)			M									설계자	
ASP구간(장비)			M										
Con'c구간(장비)			M										
소 계													
<b>2. 관 부 설 공</b>													
급수관분기			개소									청구	
P.E 접합			"										
계량기설치			"									공사장소	
P.V.C 접합			"										
나사 접합			"										
보호통 설치			"										
P.E 접합			구									공별	
교통정리인			인										
소 계													
<b>3. 자 재 비</b>													
P.E 이경 터			개									공사구분	
기 본 전			"										
P.E밸브소켓			"									계량기	구경:D mm
스테인레스 엘보			"										번호:
급수전 엘보			"									승인일자	
수 도 록 지			"										
P.E 정터			"										
분기대(일자)			"										
P.E 파이프			"									번호	
P.E 소켓			"										
소 계													
합 계													
간접노무비			%									시공자	
기타 정비			"										
일반관리비			"										
소 계													
이 율			%										
공급가액												특기사항	
부 가 세													
도급예정액													
설계수수료			식										
분 담 금			식										
계 량 기			개										
보 호 통			개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기 본 전			개										
관 금 계													
총공사비													

[별지 제4호서식]

### 급수업종변경신고서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	
급수업종			
변경하고자하는 급수업종	용으로 변경		
변경사유와 급수실태			

20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전 대장정리	조정 부정리	수납체납 정 리	검침카드 의 정리	결 재			비 고
					담당자	담 당 과 장		
급수용 으로 변경								업종 변경 하고 자함



[별지 제6서식]

### 급수사용료 직권가구분할적용 조사서

수용가번호 :

수용가주소 : 포항시 (전화번호 : )

소유자 : 급수사용자 : (소유자와의 관계 : )

상기수용가는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므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21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사(확인)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 성명 : (인)

### 급수사용가구 주민등록확인

세대명부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기재란	1		4		7		10	
부족시는	2		5		8		11	
이면에 기재)	3		6		9		12	

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7서식]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신규,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분구수전번호 :

접수일자 :

주 소 : 포항시

(전화번호 : )

소유자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위 본인(신청인) 은 1주택에 ( ) 가구가 거주하므로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21 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수도요금 영수증 1매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읍·면·동장 귀하

### 급수사용가구 주민등록확인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1		4		7		10	
2		5		8		11		
3		6		9		12		

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신청합니다.

수도전 소재지	포항시	계량기 구경	mm	비 고 (상호명등)
급수종류 (업 종)	용	전 명의인		
수 용 가 번 호		승 계 명의인 (법인명)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수 도 전 대장정리	검침부정리	수납(체납) 부 정 리	명의변경 조치하고자함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10호서식]

급 수 용 구      정 지      신 고 서  
 폐 전      개 전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 하고자 신고합니다.

수도전소재지				경    유
급 수 종 류		급수종별	용	음·면·동장
수도전 번호	등제      호	년 월 일		
사      유				

20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수도전 대장정리	검침부정리	수납(체납) 부 정 리	결    재			조치코자함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점검카드

종 별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번호		소유자			
		사용자			
월분	점검일자	지침수	사용량	검침원성명(인)	비고
년도 12월	월 일				
년도 1월	월 일				
2월	월 일				
3월	월 일				
4월	월 일				
5월	월 일				
6월	월 일				
7월	월 일				
8월	월 일				
9월	월 일				
10월	월 일				
11월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신 청 인	성명(수용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누수 수선 일자		누수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수 용 가 번 호				
업 종				
월 평 균 사 용 량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 1매.  
3. 당월 상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기초생활 수급세대	세대주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P)		수용가와 관 계	
수 도 사 용 자	수용가명		수 용 가 번호	
	소 재 지			

상기 본인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①

붙임 : 상·하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기초생활 수급세대	세대주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P)		수용가와 관 계	
수 도 사 용 자	수용가명		수용가 번호	
	소 재 지			

상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 급수공사비 집행잔액 정리통지서(원부)

공사장소		성 명	
공 사 비		납 부 년월일	비고
납 부 액	집 행 액		

###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 제 호  
 소재지 : 포항시  
 성 명 :

공 사 비		납 부 년월일	비고
납 부 액	집 행 액		

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잔액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습니다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별지 제16호서식]

(중수도,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

신청인	성명 (수용가명)		고객번호	
	주소		업종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m <sup>2</sup> )				
처리용량(m <sup>3</sup> /일)		사용수량(m <sup>3</sup> /일)		
처리방법				
설치일자		가동일자		
주용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귀하

첨부서류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수용가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시설(주소)			
총 공사비용		만원( ₩ )	
지원신청금액		만원( ₩ )	
공사기간			
시공업체	상호	대표자	(전화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6일

포항시 규칙 제 514 호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 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급수 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 가. 공사명
  - 나. 공사기간
  -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 2. 수도공사 계획
  - 가. 공사사유
  - 나. 공사개요
  - 다. 공사시기
  - 라. 수도시설 현황
  -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

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1. 수도공사개요
- 2. 납부금액
- 3. 납부장소
- 4. 납부자
- 5. 설계도서
- 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공사계획
- 2. 단수계획
-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납부금액

- 2. 납부기한
- 3. 납부장소
- 4. 납부자
-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처 :
- 시 공 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시경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 아 래 -

- 누 수 위 치 :
- 누수발생시간 :
- 단수 및 통수시간 :
- 누 수 수 량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200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

회 사 명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b>남 부 서</b> (고 지 원 부)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급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상기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포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	

<b>영수필통지서</b> (수납은행보관용)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급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년 월 일	
포항시금고징수관	

<b>영수필통지서</b> (사업소통보용)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급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상기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포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	

<b>영 수 필</b> (개인보관용)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급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상기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취급자 (인)	





**입법예고**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4. 30.

포항시 공고 제2009-592호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 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안 제3조)
- 나.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용자 시 2년 이내 연 3퍼센트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차보전 지원(안 제5조)
- 다.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 라.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제외대상 업종 명시(안 제8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5.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경제통상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413, FAX 270-2420, E-mail : yoonsky1@korea.kr)에 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지역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저 신용 자
  2.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록이 없을 것
  3. 과거 금융기관에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연체기록이 없을 것
- ②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의하여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차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용자가 가능한 5개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 4.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방 운영업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5월 1일

포항시 공고 제2009-597호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고유가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견인료를 현실화 하여 주차질서 확립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 (안 제2조)
  - 2.5톤 미만 차량 : 25,000원에서 30,000원(5,000원 인상)
  -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 : 30,000원에서 35,000원(5,000원 인상)

3.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 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교통 행정 과장, ☎ 054-270-3613, FAX 054-270-362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를 “포항시 주차위반자 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를 “「도로교통법 시 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11조의2제1항의” 를 “영 제15조제3항” 으로 하며, 제2항중 “영 제11조의2제2항의” 를 “영 제15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u>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도로교통법시행령</u>」 (이하 “영” 이라한다). 제15조제1항 ----- ----- ----- -----</p>
<p>제2조(소요비용) ①영 <u>제11조의2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영 <u>제11조의2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조(소요비용) ①영 <u>제15조제3항의</u> ----- -----</p> <p>②영 <u>제15조제2항의</u> ----- ----- ----- ----- -----</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b>  <b>소요비용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b>                      1. 견인요금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2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 분 대상차량</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견 인 료</th> </tr> <tr> <th style="width: 35%;">기본요금 (편도 5km까지)</th> <th style="width: 35%;">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b>25,000원</b></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 이상 6.5톤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b>30,000원</b></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톤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원</td> </tr> </tbody> </table> <p>2. 보관료</p> <p style="margin-left: 20px;">○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표(1급지)에 준한다. 단, 보관일로부터 1월(30일)까지 부과 징수 한다.</p> <p>3. 공고비용</p> <p style="margin-left: 20px;">○ 당해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p>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b>25,000원</b>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b>30,000원</b>	1,400원	6.5톤 이상	55,000원	2,500원	<p><b>【별표】</b>  <b>소요비용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b>                      1. 견인요금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2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 분 대상차량</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견 인 료</th> </tr> <tr> <th style="width: 35%;">기본요금 (편도 5km까지)</th> <th style="width: 35%;">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b>30,000원</b></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 이상 6.5톤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b>35,000원</b></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톤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원</td> </tr> </tbody> </table> <p>2. 보관료</p> <p style="margin-left: 20px;">○ 보관료는 1구획당 500원으로 하며 매 30분마다500원씩 추가 징수 한다. 단, 보관일로부터 1월(30일)까지 부과 징수 한다.</p> <p>3. 공고비용</p> <p style="margin-left: 20px;">○ 당해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p>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b>30,000원</b>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b>35,000원</b>	1,400원	6.5톤 이상	55,000원	2,500원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b>25,000원</b>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b>30,000원</b>	1,400원																											
6.5톤 이상	55,000원	2,500원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b>30,000원</b>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b>35,000원</b>	1,400원																											
6.5톤 이상	55,000원	2,500원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 상 차 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5,000원	2,500원

2. 보관료

- 보관료는 1 구획당 500원으로 하며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단 보관일로부터 1월(30일)까지 부과 징수 한다.

3. 공고비용

- 당해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일
포 항 시 장	

납 부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개 정 안

현 행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제2항 관련)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공 고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본)		
<p><b>남구</b>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효곡동, 대이동)</p> <p><b>북구</b> (중앙동, 양학동, 죽도동, 용흥동, 우창동)</p>	1,264.98	용흥동		1	<p>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p> <p>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p> <p>③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p> <p>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p>	<p>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관련법:17조)</p>

포항시 제2009 - 594호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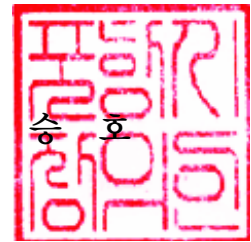


2009년 4월 29일

200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면허를 받고자 할 시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 해양수산과(☎270 - 27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 부. 끝

포항시장 박



2009. 05. 01.

제 2009-609호

### 200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공고

승인조건(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금지된 수면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장의 승인 협의시 제시한 내용은 반드시 면허 처분시 제한 또는 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재개발, 대체 등 개발되는 어장구역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 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어업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처분 하여서는 안된다.
- 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어업분쟁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을 해소한 후 면허처분 하여야 한다.
- 대체어장 개발의 경우에는 기존어장의 면허 잔여기간 이내에서 면허 하여야 한다.
- 정치망어업의 재개발이나 대체개발의 경우에는 기존어구의 설치형태(어망통수, 신망부의 크기, 길그물의 길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면허 처분시 제한 또는 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어업면허처분 시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양식물의 종류 변경인가는 '0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및 어업면허위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다른 품종으로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한한다.(단, 전복 사료용에 한해 미역 개발 가능)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포항시)

(단위:ha)

어업별	총개발 적 지	기개발		개발신청		승인		불승인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13,860	256	4,321.02	27	102.82	27	102.82	-	-	
정치어업	8,760	28	954.98	2	60	2	60			
마을어업	3,000	53	2,277.9 6							
양식어업	2,100	175	1,088.0 8	25	42.82	25	42.82			
해조류		2	5.0							
패 류	소계		6	9.0	1	1.0	1	1.0		
	전복		6	9.0	1	1.0	1	1.0		
	가리비		-	-						
어 류 등 양 식	소계		91	212.97	23	38.57	23	38.57		
	가두리		27	42.21						
	축제식		12	9.77	12	9.77	12	9.77		
	우렁 쟁이		52	161.01	11	28.8	11	28.8		
복합양식		20	61.25	1	3.25	1	3.25			
협동양식		56	799.84							

##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 승인내역

(단위: 건, ha)

시군별	수면 번호	어업별	신청지선	면적	유형별	승인 여부	검토의견
계			27개소	102.82		여27	
포항시	1	어류등양식 (축제식)	대보면 강사리	0.9	재개발	여	경북 제1615호 기간만으로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 으로 재개발
	2	어류등양식 (축제식)	구룡포읍 석병리	0.6	재개발	여	경북 제1616호 기간만으로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 으로 재개발
	3	어류등양식 (축제식)	장기면 모포리	0.96	재개발	여	경북 제1617호 기간만으로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 으로 재개발
	4	어류등양식 (축제식)	구룡포읍 석병리	1.0	재개발	여	경북 제1633호 기간만으로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 으로 재개발
	5	어류등양식 (축제식)	구룡포읍 구평리	0.495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경북 제1763호 어류등양식 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 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어류→어류·전복)
	6	어류등양식 (축제식)	구룡포읍 구평리	0.49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경북 제1764호 어류등양식 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 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어류→어류·전복)
	7	어류등양식 (축제식)	장기면 신창리	0.315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경북 제1765호 어류등양식 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 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어류→어류·전복)
	8	어류등양식 (축제식)	장기면 신창리	0.495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경북 제1766호 어류등양식 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 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어류→어류·전복)
	9	어류등양식 (축제식)	장기면 영암3리	0.985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경북 제1767호 어류등양식 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 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어류→어류·전복)
	10	어류등양식 (연승식)	장기면 대진리	2.6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12호 어류등양식어 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 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우렁쟁이→다시마·감 태·우렁쟁이)
	11	어류등양식 (연승식)	구룡포읍 석병리	3.0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41호 어류등양식어 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 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우렁쟁이→미역·감태· 우렁쟁이)
	12	어류등양식 (축제식)	구룡포읍 병포리	2.0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67호 어류등양식어 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 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어류→어류·전복)

시군별	수면 번호	어업별	신청지선	면적	유형별	승인 여부	검토의견
포항시	13	복합양식 (연승식)	장기면 계원리	3.25	대체개발 (이설)	여	포항 제70호 복합양식(미역·우렁쉥이)어장을 어장경비·정리 및 양식환경이 양호한 외해수역으로 이동 대체개발(계원→계원지선)
	14	어류등양식 (연승식)	홍해읍 곡강리	2.0	대체개발 (복합양식) 이 설	여	포항 제72호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을 외해로 이설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다시마·감태·우렁쉥이)(칠포→곡강리)
	15	어류등양식 (연승식)	홍해읍 곡강리	3.0	대체개발 (복합양식) 이 설	여	포항 제75호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을 외해로 이설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미역·감태·우렁쉥이)(칠포→곡강리)
	16	어류등양식 (연승식)	구룡포읍 석병1리	3.0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82호 어류등양식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미역·감태·우렁쉥이)
	17	어류등양식 (연승식)	구룡포읍 구평2리	1.0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87호 어류등양식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미역·감태·우렁쉥이)
	18	어류등양식 (연승식)	구룡포읍 장길리	4.0	대체개발 (복합양식) 이설	여	포항 제89호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을 외해로 이설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미역·감태·우렁쉥이)(구룡포리→장길리)
	19	패류양식 (침하식)	구룡포읍 장길리	1.0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92호 패류양식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전복→전복·미역·다시마)
	20	어류등양식 (연승식)	구룡포읍 장길리	3.0	대체개발 (복합양식) 이설	여	포항 제93호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을 외해로 이설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미역·감태·우렁쉥이)(영암리→장길리)
	21	어류등양식 (연승식)	장기면 영암리	2.0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109호 어류등양식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다시마·감태·우렁쉥이)
	22	어류등양식 (연승식)	홍해읍 곡강리	4.0	대체개발 (복합양식) 이설	여	포항 제121호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을 외해로 이설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우렁쉥이→미역·감태·우렁쉥이)(칠포리→곡강리)
	23	어류등양식 (축제식)	장기면 신창리	1.05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122호 어류등양식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어류→어류·전복)



시군별	수면 번호	어업별	신청지선	면적	유형별	승인 여부	검토의견
포항시	24	어류등양식 (축제식)	장기면 영암2리	0.48	대체개발 (복합양식)	여	포항 제136호 어류등양식어업을 동일장소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어류→어류·전복)
	28	정치망어업	홍해읍 오도리	10.0	대체개발 (이설)	여	경북1524호를 재해예방 및 조류소통이 좋은 외해(외해 1300m)로 이설하여 어업소득 증대(오도리→오도리)
	29	정치망어업	청하면 청진리	50.0	대체개발 (이설)	여	경북 1527호를 재해예방 및 조류소통이 좋은 외해(외해 2000m)로 이설하여 어업소득 증대(청진리→청진리)
	30	어류등양식 (연승식)	장기면 영암리	1.2	대체개발 (복합양식) 이설	여	포항 제53호 어류등양식어업(우렁챙이)을 어장정비·정리차원에서 인근수역으로 이설 복합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 (우렁챙이→미역·감태·우렁챙이)(하정2리→영암리)